

食品犯罪의 行政的 豫防과 團束

保健社會部 衛生局長

曹 基 彥

I. 序 論

一般的인 刑事犯은 法規以前에 反倫理性和 反社會性이 存在하고 있는데 食品犯罪은 상대적으로 行政法規인 食品衛生法 등에 의하여 構成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食品犯罪의 成立과 食品犯罪의 團束을 論議하기 위하여는 食品犯罪가 構成되는 食品衛生法 등 行政法上 義務나 禁止內容이 우선 檢討되어야 할 것이고 一般刑事犯과 달리 團束의 수단 역시, 行政刑罰로서의 懲役·罰金과 行政制裁인 不利益處分으로서의 營業停止, 許可取消 등의 여러가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論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食品衛生은 通常 世界保健機構(WHO)의 環境衛生專門委員會에서 정한 바 있는 정의로 곧잘 說明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食品衛生이란 食品의 成長(growth), 生産(production), 製造(manufacture)로부터 最終的인 消費(consumption)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食品의 安全性(safety), 完全性(wholesomeness) 및 健全性(soundness)을 確保하기 위한 必要한 手段과 方法을 의미한다” 이러한 定義에 根據하여 볼 때 食品犯罪라 하는 것은 바로 食品의 安全性, 完全性 및 健全

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마련된 手段과 方法과 關聯하여 一般國民에게 一般的으로 부여한 義務의 不履行 또는 禁止事項에 대한 違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食品犯罪의 豫防이라는 것은 食品衛生法을 위시한 食品關係 行政法規의 目的을 効率的으로 達成하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食品犯罪의 豫防이란 食品衛生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關聯된 事項을 어떻게 効率的으로 規制하느냐 하는 內容이 될 것이며 食品犯罪의 團束이라는 것은 食品衛生의 目的達成을 確保하기 위한 手段인데 이러한 手段으로서 實効性을 어떻게 維持하여 나가느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食品犯罪의 豫防과 團束이라는 本 論議를 效果的으로 進行하기 위하여는 먼저 食品犯罪를 成立시키는 주체로서 食品衛生行政 및 變遷過程 그리고 食品犯罪의 內容을 構成하는 食品衛生行政의 規制對象에 대한 把握이 必要하다고 보며, 이러한 把握에서 食品犯罪의 行政的 豫防과 團束에 관한 內容이 效果的으로 論議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II. 食品行政의 變遷過程

食品行政이 國家에 의하여 管理되어야 할

對象으로 인정된 歷史는, 食品行政을 食糧調達の 次元에서 보면 古代國家의 成立時期로 거슬러 올라가야겠지만, 食品衛生이라는 側面에서 본다면, 그 歷史는 오래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볼 때 農業中心의 社會에서 産業社會로 國家社會가 轉換됨으로써 食品의 1次的 生産者와 最終消費者와의 關係에 製造加工, 運搬, 貯藏, 保管, 調理, 販賣 등 複雜하고 수많은 過程이 분화되고 添加되어 最終消費者가 이러한 複雜한 과정중에서 食品의 安全性등을 確保할 수 있는 위치를 喪失하게 됨으로써 國家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複雜한 제 단계에서의 食品衛生을 하나의 國家의 주된 行政機能으로 점점 더 밀도있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食品衛生의 行政은 日帝時代에 警察局 衛生課에서 擔當되다가, 해방후 軍政廳 保健厚生部를 거쳐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된 후 社會部에서 맡게 되고, 社會部가 保健部로 분리된 때에는 保健部에서 約 6年間 擔當되었고, 1955年 保健部와 社會部가 保健社會部로 統合된 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食品衛生의 全般의인 事項을 保健社會部에서 관장하고 있다.

食品衛生行政의 주된 內容도 1962年 1月 20日 食品衛生法이 制定 公布되기 前까지는 日帝時代의 “衛生上 危害飲食物 및 有害物品 取扱規則(1911, 總領 133號)” 등 朝鮮總督部에서 정한 法令등과 軍政時 制定된 食品製造의 免許 등에 관한 法令 등이 主內容으로서 施行되었는데, 1962年의 食品衛生法이 制定 公布됨으로써 韓國의 食品衛生行政의 구체적 內容이 마련되었다 할 것이다.

특히 60年代以後 韓國社會의 급격한 産業化 및 都市化와 經濟發展으로 인한 國民所得 水準의 向上은 食品衛生의 영역을 擴大시키고 國家의 食品衛生에 대한 관심을 提高시켰는바, 즉 經濟水準의 向上으로 食品이 단순한 食糧으로서가 아니라 健康維持와 嗜好充足의 對象으로 變化되었고 産業化와 都市化 등의 社會變化는 食品調達の 편의성을 추구하게

되고, 香料·人工色素·保存料 등의 添加物 産業과 製造技術의 發展은 食品製造加工業의 비약적인 發展을 가져오게 되었음과 아울러 不正·不良食品, 食品의 安全性 등에 대한 관심 역시 最近 有害공나물事件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척 높아졌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食品衛生法이 1962年 制定以後 6次에 걸쳐 改正되고, 食品衛生法施行令 역시 12次에 걸쳐 改正된 事實과 1969年 8月 4日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제정 등 그 外形의인 面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現行 食品衛生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現在의 우리나라 食品衛生行政의 現住所를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Ⅲ. 食品行政의 對象과 當面課題

1. 對 象

食品衛生行政의 對象과 範圍는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食品營養의 質的向上을 圖謀함으로써 國民健康의 增進에 이바지한다”라는 食品衛生法의 目的과 우리나라의 구체적 政治·經濟·社會的인 여건에서 정하여진다고 할 수 있다.

즉, 食品에 관한 어떤 內容을 食品이 消費者에게 攝取되기 전까지의 여러단계 즉 栽培·生産·製造加工·流通·調理段階 중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규제하느냐를 정해둔 內容이 現行 食品衛生法으로 볼 수 있는데 現在 정하고 있는 規制의 內容은 다음과 같이 9가지로 대별하여 볼 수 있다.

가. 非衛生的食品 등의 排除

非衛生的인 食品(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 有毒 有害한 物質을 포함한 것, 汚染된 것, 불결한 것), 병육, 保健社會部長官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添加物, 그리고 有害 有毒한 器具·容器·包裝은 國民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根源의으로 封鎖하고 있는데, 이러한 食品 등은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採取·製造·加工·運搬·調理 등을 하지 못하며, 아울러 營業上 目的으로 使用하지 못하도록

基準 및 規格	食 品	添 加 物	容 器 · 包 裝
公 定	131種 (大衆食品)	368種 (化學的 合成品)	16件 (大衆食品의 容器·包裝)
自 家	2,500餘種 (其他食品)	1,500種 (天然添加物)	새로운 材質의 品目

록 하고 이를 위반시 食品衛生法뿐 아니라 保健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등에 의하여 嚴格히 團束하도록 하고 있다.

나. 食品 등의 規格 및 基準 制定 施行

食品衛生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과 添加物에 대하여는 그 製造·加工·使用·調理 및 保存의 方法에 관한 基準과 食品과 添加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을 保健社會部長官이 直接 訂하여(公定 規格 및 基準) 이에 따르게 하거나 또는 製造加工業者가 스스로 이러한 基準과 規格을 訂하게 한뒤 保健社會部長官이 이를 檢査確認하고 인정하여 주는(自家基準 및 規格) 制度를 導入하고 있는데, 이러한 公定規格 및 基準과 自家基準 및 規格이 訂하여진 食品 및 添加物은 그 規格 및 基準에 맞지 아니하게 製造,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使用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化學的 合成品은 公定規格이 訂해져 있지않은 경우 使用自體를 嚴格히 禁止하고 있다.

아울러 器具·容器·包裝의 경우 食品과 동일하게 規格과 基準을 訂하도록 하고 販賣를 目的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이 基準 및 規格에 따라야 하도록 하고 있다.

現在 基準 및 規格이 制定·告示되었거나 인정된 對象 食品등은 위표와 같다.

다. 食品檢査制度和 檢査機關

1) 食品檢査制度

○ 우리나라 食品檢査制度

現在 우리나라에서 運營하고 있는 檢査制度로는 事前檢査制度和 事後檢査制度로 크게 2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事前檢査制度란 生産者가 許可받은 品目を 生産 販賣時마다 當該 製品을 生産後 國家檢定機關에 生産品目과 그 生産量등을 제시하

고 食品衛生法에서 訂하는 規格基準에 適合한지 여부를 檢査하여 줄 것을 申請함에 따라 이를 接受, 檢體를 수거 檢査한 後 適合하면 製品의 매 유통단위 포장마다 國家가 發給하는 檢査증지를 添附케 하여 流通販賣토록 하는 制度로서, 現在 이에 해당되는 對象品目は 添加物인 보존료와 그 製劑品, 타일色素와 그 製劑品 및 一般食品중 人蔘製品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規格違反 製品을 사전에 封鎖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生産者의 自律性이 抑制되고 生産者나 管理者 모두 많은 時間과 經費가 所要된다는 점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않아 철저한 衛生管理가 要求되는 衛生上 脆弱品目이거나 品質維持의 特別管理가 要求되는 극히 一部品目에 대하여만 適用하고 있다.

事後檢査는 生産者가 그 製造를 許可받은 品目に 대하여 우선 生産 販賣토록 許容하고 製造業所에 대한 주기적 임검이나 流通製品에 대한 指導監視를 하는 과정에서 檢査의 必要性이 인정될 때에는 監督官廳은 수시로 이를 수거 檢査하는 制度로서 生産者의 自律性을 最大限度로 보장하는 한편 不正·不良食品이나 有害食品을 製造·販賣하는 惡德業者 등에 대하여는 食品衛生法令이 訂하는 規定에 따라 行政處分 및 告發措置 등의 處罰措置가 따르는 것으로 現在 위 事前檢査 對象品目を 除外한 全品目の 製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制度이다.

○ 先進外國의 食品檢査制度

國家別로 對象品目は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檢査制度上으로 볼 때는 美國이나 日本등에서도 品目に 따라 事前檢査制度和 事後檢査制度를 運營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다 하겠으나, 美國은 現在 事前檢査品目으로

〈표 1〉 우리나라 食品檢査機關

區 分	計	公 的 檢 査 機 關			指定檢査機關
		中 央	市 · 道	海 · 空 港	
設置數	29	1	14	13	1
機關名		國立保健院	保健環境研究所	國立檢疫所	食品工業協會 附設食品研究所

* 檢疫所는 輸出·入 食品을 위주로 檢査함. 出

서 타알색소만을, 日本에서는 타알색소, 간수에 대하여만 事前檢査品目으로 하고 政府가 정하는 檢査를 지정된 檢査機關에서 받도록 하여 이에 適合한 表示를 부착하지 않으면 販賣 또는 販賣의 目的으로 진열이나 營業上 使用하지 못하도록 製品管理를 하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運營上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對象品目を 극소화하고 있거나 모든 品目を 事後檢査 制度化하여 生産業所의 自律性을 最大限으로 認定·保障하는 한편 수시로 임검 수거를 통하여 製品管理를 철저히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食品檢査機關

○ 우리나라 檢査機關

事前製品檢査와 임검 수거에 따른 食品·添加物·器具·容器·包裝에 관한 事後檢査 業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必要한 施設 등을 갖춘 機關을 對象으로 食品衛生檢査機關을 指定하여 運營하고 있다.

食品衛生法에 의하여 食品衛生 檢査機關으로 指定된 機關은 〈表 1〉에서와 같이 中央에 國立保健院(1個所), 各 市·道에 保健環境研究所(14個所), 國立檢疫所(13個所)와 保健社

會部長官이 별도로 정한 基準에 適合하고 아울러 그 必要性이 認定되어 保社部長官이 지정한 民間團體 檢査機關인 食品研究所(1個所) 등 總29個 檢査機關이 있다.

○ 外國의 檢査機關

日本이나 西獨은 〈表 2〉에서와 같이 公的 檢査機關인 國家機關과 國家가 民間研究團體 등을 對象으로 指定 認定하는 指定檢査機關으로 區分 運營하고 있는 반면에 美國, 캐나다, 濠洲 등 대다수의 國家에서는 公的 檢査機關으로서의 國家가 設立한 國家檢査機關만을 認定 運營하고 있다.

라. 表示基準의 制定 및 虛僞·誇大表示 團束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食品·添加物·器具·容器·包裝은 表示하여야 할 內容(製造年月日 등 11가지)과 表示는 한글을 原則으로 한다는 등 表示方法에 대하여 基準을 정하고 이러한 基準에 맞지 아니하는 製品은 販賣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正確한 製品의 情報를 消費者에게 알려 消費者를 保護하게 하는데 趣旨가 있다.

특히 食品의 內容과 表示內容이 다르거나 과장된 虛僞 및 誇大表示와 誇大包裝 등은 嚴

〈표 2〉 外國의 食品檢査機關 事例

區 分	計	公 的 檢 査 機 關	指定檢査機關
美 國	30	30	-
日 本	75	31	44
西 獨	81	54	27
카 나 다	6	6	-
濠 洲	7	7	-

격히 제한하고 있다.

마. 營業 및 品目製造·許可

食品衛生을 確保할 수 있는 具體的 方案으로서 食品衛生法令은 食品 등을 製造·加工하거나 食品을 調理 提供하는 경우 食品衛生을 確保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設基準을 마련하여 이러한 業種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營業을 할 수 있도록 許可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製造·加工業者가 特定食品을 製造·加工하고자 할 때에는 그 品目이 食品 등의 規格 및 基準에 맞게 製造·加工될 수 있도록 그 品目에 대한 製造·許可를 아울러 得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바. 健康診斷 및 衛生教育

製造·加工業所나 接客調理業所에서 食品을 直接 取扱하는 者에게 定期的으로(1년에 2회) 健康診斷을 받게 하여 疾病의 傳染可能性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定期的으로 衛生教育을 받게 하여 食品衛生에 관한 國家의 施策이나 專門的인 內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 衛生監視員 運用

食品衛生에 관한 國家業務를 專門的이고 効率的으로 處理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와 市·道 및 市·郡·區에 食品衛生監視要員을 두도록 하고 그 具體的 職務를 정해두고 있는데, 이 食品衛生監視員은 食品衛生法規 및 食品衛生制度 施行의 最일선 擔當者라 할 수 있다.

아. 衛生管理人 制度

食品衛生의 向上을 위하여는 國家의 効率的 管理도 중요하지만 製造·加工業者 自身の 自發的인 努力과 協力이 필요하다.

따라서 製造·加工業者는 일정한 資格을 갖춘 食品衛生管理人을 두거나 營業者 自身이 食品衛生管理人이 되어 原料檢査 및 製品의 出荷前檢査, 食品 등 基準 및 規格에 適合與否 檢査, 製品表示事項 點檢 등 食品衛生에 관한 事項을 自律的으로 規制 監督하도록 하고 있다.

자. 製造加工業者 및 接客調理業者에 대한 義務事項 부과

保健社會部長官은 製造·加工業者가 衛生的인 原料管理와 製造工程管理 그리고 効率的인 品質管理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具體的 內容에 대하여 製造·加工業者의 遵守事項으로서 義務를 부여 하도록 하고 있는데 衛生的인 原料管理, 自家品質管理, 從業員의 衛生管理 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한 接客·調理業者의 경우에도 保健社會部長官은 營業의 衛生的管理와 秩序維持 그리고 國民保健衛生增進을 위하여 必要한 구체적 內容에 관하여 遵守事項으로서 義務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衛生的인 器具의 使用, 調理場 등의 清潔維持, 從業員의 衛生管理, 風紀紊亂防止 등을 그 內容으로 하고 있다.

2. 當面課題

食品犯罪의 豫防을 위한 食品衛生行政의 當面課題는 크게 食品衛生行政을 科學的이고 効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具體的 制度導入 및 制度改善事業, 이를 遂行하는 專門人력과 効率的 行政體制樹立 그리고 衛生行政의 目的을 強制的으로라도 달성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食品犯罪團束體系의 實効性 確保方案 등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가. 食品衛生管理事業의 強化－科學化, 効率化

食品衛生行政을 科學的이고 効率的으로 執行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具體的 制度를 導入하고 改善하는 事業의 內容을 食品衛生管理事業이라고 規定할 수 있는데 이 事業은 食品衛生上の 問題點을 事전에 把握하여 事전에 豫防的 規制를 目的으로 한다 할 것이다.

88年 主要 食品衛生施策事業인 食品·添加物 등의 規格基準 整備事業, 食品의 安全性提高를 위한 農産物과 水産物의 유해성 調査 研究事業, 食品添加物의 認·許可 管理制度

改善事業 등이 이러한 事業에 해당된다.

○ 食品 등의 規格基準 改正

現行 食品·添加物 등의 規格 및 基準은 當該食品의 成分 規格과 이를 檢査하는 試驗方法 위주의 衛生管理에 偏重되어 있다.

그러나 先進諸國과 Codex 國際食品 등의 規格은 그 製造原料의 購入, 具備條件 및 處理要領에서부터 完製品이 最終消費者에 供給되기까지의 製造·流通 및 表示事項 등에 대한 것까지의 規格과 基準을 總括적으로 規定하여 管理하고 있는 實情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規格과 試驗方法의 衛生規格 위주로 食品 등의 規格基準을 設定運用함으로써 食品으로 인한 衛生上의 위해의 防止面에서는 어느정도 既存의 食品規格이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날로 變化해 가는 國際的 趨勢와 새로이 開發되는 食品·添加物 등에 대한 積極향상을 추구하는 면에서 이에 대처하기에는 未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면 補完한 새로운 規格基準體制를 모색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既存의 131個 食品規格 및 試驗方法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檢討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規格 및 基準이 確定 告示되어 '89.1.1부터 施行될 豫定이다.

이어서 '89年度에는 그동안 部分的으로 改正 運用하여 오던 368種의 添加物 含量이나 試驗方法 등의 公定規格에 대하여도 國際的 趨勢의 傾向에 따라 食品 및 添加物의 安全性 提高를 통한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外國의 基準 및 우리의 현실등을 勸案하여 合理的인 使用基準이나 새로운 檢査方法 등을 導入하는 國際化 水準體制로 전면 再檢討 補完이 필요하다.

○ 農水産物의 安全性 提高

食品의 安全性 提高를 위한 사과, 배, 복숭아 등 7個 農作物의 農藥殘留量 檢査와 紅蛤, 白蛤 등 10種의 水産物의 重金屬 汚染實態 調查는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러한 有害食品의 生産이 源泉의으로 봉쇄되도록 基準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 認·許可 管理制度 改善

우리나라 食品 등의 規格 및 基準이 國際化 되고 衛生上 위해 가능성이 減少된다면 現在 施行되고 있는 製品의 品目許可制度도 까다로운 規制의 필요성이 減少될 것이므로 許可制度에서 申告制度로의 이행 등 制度改善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食生活習慣 및 食品 등의 유통양태의 變化趨勢에 맞추어 許可對象業種의 再分類 및 新規分類가 필요하다.

○ 製品別, 季節別 有效期間 設定

流通其間表示는 빵類 및 과자류 등 14個 品目の 流通製品에 대하여만 設定 運營되고 있으나 品質管理와 消費者保護의 일환으로 전 品目에 대하여 擴大實施하고 우유 등 變質可能性이 높은 製品에 대하여는 季節別로 有效期間을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 食品衛生檢査機關의 보강

－ 檢査施設의 現代化

現在 政府에서 公的 檢査機關으로 指定運營하고 있는 市·道 保健研究所의 施設 및 소장하고 있는 檢査裝備 등은 精密檢査가 가능한 現代化 機器로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檢査機關의 活性化를 위한 일환으로 檢査施設의 現代化計劃을 금년부터 5個年計劃으로 점진적으로 보강하여 기기분석을 통한 보다 精密檢査를 기하는 한편 中央의 檢査業務를 일선지방 檢査機關등에 이관하여 보다 效率的인 檢査業務를 수행케 함으로써, 앞으로 地方行政體制化 시대에 대비한 일선 檢査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遂行할 수 있도록 함은 勿論, 檢査機關의 장기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檢査人力의 增員 및 專門化

現在의 檢事人力의 資質에 있어서도 새로운 檢査裝備 購入 運用과 관련하여 볼 때, 이를 원활히 運用할 수 있는 技術習得 등 그 資質이 결여되고 있어 이점 또한 檢査機關의 人力構造에서 중요한 問題點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에서는 일선 檢査機關의 활성화 方案의 일환으로 檢査裝備의 擴充과 함께 금년초에는 關係部處와 協議, 檢査人力을 일부 增員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國家豫算이 許容하는 範圍內에서 이의 보강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高精密 新規裝備 確保에 따른 檢査要員 訓練機會를 擴大함으로써 檢査人力의 專門化를 기하여 檢査業務의 效率性 및 公信力을 提高코자 한다.

나. 食品衛生行政 管理體制 보강

現行 食品衛生行政은 保健社會部, 市·道, 市·郡·區의 衛生行政 體系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行政機構의 側面에서 볼 때 行政命令과 監督權등 行政體制가 保健社會部와 內務部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의 效率의 綜合化·一元化가 요청된다 할 것이며, 특히 專門的인 食品衛生上 法定監視活動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衛生監視要員의 專門化, 專門要員의 增員이 要請된다.

아울러 이러한 食品衛生監視員의 活動支援과 함께 製造·加工業者 스스로 自律的으로 食品衛生을 向上시키고자 마련된 食品衛生管理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教育의 內實化, 食品衛生管理인 활동영역 및 의무부여와 이의 體系의 管理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民間食品衛生團體의 自律的 監視活動의 擴大 및 이의 活用方案도 食品衛生의 向上을 기하는 方向으로 檢討하여

야 할 것이다.

다. 實効性 있는 團束體系 確立

食品衛生行政에 있어서 團束이라는 側面은 食品衛生行政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義務나 禁止를 強制的으로 이행케 하는 것으로 그 수단은 現在 行政制裁와 行政罰로 크게 대별된다. 행정제재는 是正命令, 廢棄處分, 施設의 개수명령, 營業의 정지 내지 許可取消, 品目製造許可取消, 廢鎖措置 등이 있고 行政罰로서는 罰金, 懲役, 過怠料가 있는데 이러한 수단의 使用에 있어 公正性, 實効性, 實現可能性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食品犯罪의 團束 및 處理狀況

1. 食品犯罪關係法規

우리나라의 食品衛生管理制度와 關聯되어 있는 法規는 食品衛生法, 畜產物衛生處理法,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주세법, 農藥管理法 등이 있는데 주된 法規는 食品衛生法이라 할 수 있고 保健犯罪에 가장 強力하게 直接 規制處罰하는 法은 保健犯罪에 관한 特別措置法이다.

최근 反社會的 反倫理的인 食品犯罪團束의 實効性을 높이기 위하여 違법행위자에 대한 罰則을 강화하였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86.5 食品衛生法 改正

〈표 3〉 兩法の 差異點

區 分	食 品 衛 生 法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
○立法趣旨	食品衛生 전반에 관한 一般의인 許可, 安全性 確保 및 罰則 規定 (1962. 1. 20 改正)	保健犯罪 중 不正食品製造 및 不正醫藥品製造, 不正毒劇物製造, 無免許醫療行爲에 대한 加重處罰 (1969. 8. 4 制定)
○罰 則 有毒·有害食品 製造·販賣로 사람을 死傷		死刑, 無期 또는 5年以上 懲役(小賣價格의 2 배이상 5 배이하 상당 罰金을 병과)
○有毒·有害食品 및 無許可食品 製造販賣	5年以下の 懲役 또는 1,500萬圓 以下の 罰金 (罰金 병과할 수 있음)	無期 또는 5年以上の 懲役 (小賣價格의 2 배이상 5 배이하 상당 罰金 병과)

無許可 또는 有毒·有害食品 등 販賣禁止에 위반하였을 때에 3年以下の懲役 또는 300萬圓以下 罰金→5年以下 懲役 또는 1,500萬圓以下 罰金

○ '86.5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改正

不正食品製造·販賣로 사람을 사상케 한자는 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死刑·無期 또는 5年以上의 懲役

※現在 保健犯罪團束法은 食品 또는 添加物の 販賣額이 小賣價格으로 年間 500萬圓 이상되거나 人體에 현저히 유해할 경우 食品衛生法에서 3年以下の 懲役으로 處罰하는 罰則을 무기까지 加重處罰하는 特別法이다.

2. 食品犯罪類型 및 團束實績

食品犯罪의 類型은 여러 基準에 의하여 分類될 수 있으나 그 하나가 그 犯罪의 성격이 反社會的 反倫理的인가 아니면 단순히 食品衛生制度上 부여하고 있는 一般的 義務나 禁止事項의 위반으로 행정상의 질서위반인가를 基準으로 한 分類이다. 전자에는 農藥 콩나물, 색소를 添加한 生鮮類등 人體에 有害한 食品을 製造販賣하는 것이 해당하며, 후자에는 人體에 直接 해가 되지 않지만 食品衛生의 질서에 반하는 無許可製造販賣, 食品의 虛偽 및 誇大表示, 製造施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衛生上 目的을 위하여 부여된 義務나 禁止事項을 지키지 않고 非衛生的으로 食品을 製造販賣하는 것등이 包含된다. 이를 食品犯罪의 類型과 實際 團束과를 關連하여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有害食品의 製造·販賣

○ 아황산염을 使用한 채소류

아황산염은 食品의 變色과 부패를 防止하기 위하여 使用하는 添加物로서 야채나 과일을 싱싱하게 보이기 위하여 使用하는데 冷蔵施設을 구비한 백화점등에서 수거한 製品에서도 檢출되는 경우가 있다.

○ 황색색소를 使用한 생선류

참조기로 위장하기 위하여 황색색소로 染色하여 販賣하고 있다.

○ 有害農藥 使用 콩나물

양질의 콩나물로 보이기 위하여 禁止된 農藥을 使用하여 生産한다.

○ 가짜 참기름

禁止된 호마박을 使用하여 가짜 참기름을 製造·販賣한다.

○ 죽편

죽편에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를 添加하여 有害한 죽편을 만들어 流通한다. 이러한 有害식품에 대한 단속사례는 <表 4>와 같다.

나. 衛生上 要件이나 基準 및 規格 등 違反

食品衛生法規에 의하여 施設調査나 製品檢事를 행할 경우 나타나는 이러한 食品犯罪은 施設調査의 경우 食品衛生法規등에서 정하고 있는 施設要件의 미비, 非衛生的인 從業員管理, 自家品質檢事義務의 不履行등이 主要內容이며 製品檢事時에는 無許可製品製造, 成分 規格 및 基準不適合, 虛偽 및 誇大表示등이 주로 적발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人體

<표 4> 有害食品 團束事例

食品名 檢査内容	青葉菜類 아황산염류	조기류 황색색소	콩나물		죽편 포름알데히드	참기름
			農藥	수은		
檢査件數	1,057	6	1,629	1,149	3	4
不適件數	46	6	131	3	3	4
不適率(%)	1.1		8.0	0.3		
檢査年度	'86~'87	'86	'87	'87	'87	'87

〈표 5〉 年度別 食品衛生關係業所 및 製品衛生檢查實績

年度別	業所數	施設件數	施設調査		製品檢査		
			違反件數	違反率	檢査件數	違反件數	違反率
'178	145,715	264,287	62,713	23.7	36,591	1,517	4.1
'79	156,751	249,110	63,448	25.4	21,388	503	2.4
'80	186,377	316,257	65,952	20.9	20,384	529	2.6
'81	202,691	342,798	70,593	20.6	25,232	733	2.9
'82	214,887	385,415	85,813	22.3	22,624	870	3.8
'83	233,999	370,090	98,081	26.5	21,884	669	3.1
'84	255,884	370,982	82,733	22.3	20,242	605	2.9
'85	272,296	408,252	90,325	22.1	23,923	821	3.4
'86	289,829	520,988	114,905	22.1	22,079	512	2.3
'87	305,569	413,038	74,424	18.0	21,582	362	1.7

에 해를 주거나 反社會的 反倫理的인 때에는 앞에서 論한 有害食品의 製造·販賣와 동일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제재는 行政處分

과 함께 行政罰이 동시에 부과된다.

最近 6年間 施設調査結果와 製品收去檢事結果를 보면 〈表 6〉과 같은데, 施設調査의 경

〈표 6〉 食品衛生關係業所 및 製品調査와 行政處分現況

1. 施設調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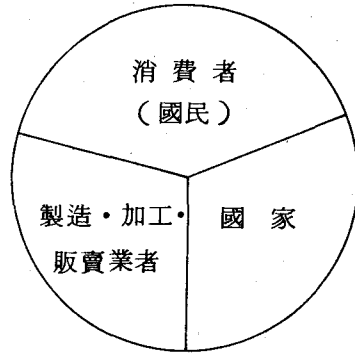
	實 施 件 數	處 分 件 數						告 發	
		計	許 可 取 消	營 業 (品目) 停 止	施 設 改 修	警 告	其 他	許 可	無 許 可
計	2,055,727	471,857 100%	55,677 11.8	40,512 8.6	201,927 42.8	173,376 36.7	365 0.1	961 160	38,887 6,481
'82	385,415	85,813	10,763	8,482	40,170	26,070	328	119	4,796
'83	370,090	98,081	12,934	9,305	46,044	30,338	—	50	5,871
'84	370,982	82,733	11,077	7,733	30,289	33,597	37	150	6,816
'85	408,252	90,325	9,977	7,622	37,302	35,424	—	192	7,425
'86	520,988	114,905	11,466	7,370	48,122	47,947	—	200	8,438
'87	420,996	75,036	9,390	6,435	22,059	37,152	—	250	5,541

2. 製品衛生檢査

	收 去		處 分 件 數				告 發
	檢 査	不 適 件 數	許 可 取 消	停 止	警 告	其 他	
計	110,752	3,487 100%	97 2.8	1,887 54.1	847 24.3	65.6 18.8	256 42
'82	22,624	880	12	530	193	145	54
'83	21,884	669	10	439	108	112	46
'84	20,242	605	11	314	137	143	26
'85	23,923	821	17	371	277	156	76
'86	22,079	512	47	233	132	100	32
'87	21,582	362	2	152	127	81	22

우 23% 정도의 違反率을 나타내고 製品收去 檢査는 3%内外의 不適率을 나타내고 있는바 각각 年度別 違反率은 상당히 減少추세에 있다(시설 22%→18% 제품 3.8→1.6)를 보이고 있다.

施設調査의 結果 違反者에 대한 行政處分은 주로 施設改修命令(平均 42.8%)과 警告處分(平均 36.7%)이 내려지고 있고, 製品檢査 結果 違反時에는 주된 處分은 製造停止處分(54.1%), 警告處分(24.3%)이 되고 있다.



V. 食品犯罪發生要因과 團束 및 處理上 問題點

食品衛生制度는 食品의 供給者로서 食品製造・加工・販賣業者, 食品의 需要者로서 一般消費者, 그리고 食品衛生과 安全을 保障하고자 하는 規制者로서의 政府라는 세 要素로 構成되어 있다 할 것이다. 즉, 産業社會의 擡頭로 消費者가 食品의 製造・加工・販賣業者에 대한 직접적 監督者로서의 役割을 喪失하게 되고 國家가 消費者와 生産者의 中間에서 食品의 安全性을 保障하는 媒介者가 됨으로써 食品衛生行政 및 制度가 形成・發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食品衛生制度上 세가지 要素를 가지고 食品犯罪의 發生要因과 團束 및 處理上

(食品衛生制度上的 3가지 構成要素)

問題點을 살펴볼 수 있는데 製造・販賣業者는 食品犯罪을 發生시키는 主要因으로, 消費者 및 國家는 이러한 食品犯罪을 發生케 하는 環境의 提供者로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製造・加工・販賣業者의 能力・意識・行態, 消費者의 消費水準・意識 그리고 國家의 食品衛生專擔機構의 能力・規制制度 등 등이 食品犯罪의 發生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食品製造・加工・販賣業者 - 食品犯罪 發生原因

가. 食品製造・加工・販賣業所의 零細性

食品關係業所는 '87年末 現在 465,219個로서 <表 8>에서 보듯이 그 規模나 施設面에서

<표 7> 日本 食品衛生關係業所 및 製品調査와 行政處分現況

1. 實施調査

年 度	營業施設數	處 分 件 數							告 發
		計	許 可 取 消	營 業 禁 止	營 業 停 止	改 善 命 令	廢 棄 處 分	其 他	
'84	4, 151, 773	21, 133	—	175	947	153	246	19, 612	102
'82	4, 077, 680	24, 309	1	148	929	217	346	22, 636	32

2. 製品衛生檢査

年 度	收去檢査件數	不良檢體數	不 適 率 (%)	備 考
'84	196, 486	5, 149	2.6	
'82	226, 976	8, 201	3.6	

大部分의 業所가 零細한 實情이다.(從事者 5 人以下의 業體가 全體의 70% 이상) 우리나라의 食品關係業所의 落後는 그동안 國家技術開發政策이 重化學工業에 重點을 둔 반면에 食品産業 育成에 소홀한 것도 한 原因으로 볼 수 있지만 傳統的인 食生活, 原材料의 制限性, 加工技術의 不足, 技術開發投資의 未洽 등, 그 原因이 多樣하다고 하겠다. 특히 食品産業은 여타 工產品 製造業이나 단순한 食糧의 管理와는 다른 獨自의인 産業으로 發展體系를 維持하여야 하나, 이제까지는 食品産業에 대한 發展 및 育成에 消極的이었다. 또한 原料의 不足과 함께 生産技術의 落後도 國內 食品産業이 안고 있는 重要한 問題中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食品産業의 技術水準은 品目에 따라 상당히 큰 隔差를 나타내어 調味料, 製粉業, 製菓, 製糖 등 몇가지 業種을 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 낮은 水準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輸出主導型 開發戰略下에서 食品産業의 育成이 疎外된 데에도 問題가 있다고 본다.

나. 食品製造·加工 및 接客業所의 意識 및 姿勢

食品製造·接客業 등에 從事하는 主人과 從業員등은 자기 職業에 대한 專門性과 矜持를 가지고 努力하는 姿勢가 重要하다고 보는데, 大部分의 業所의 경우 적절한 資質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고 國民保健을 위하여 또는 社會的으로 責任意識 등이 소홀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食品接客業의 경우는 우리나라 古來로부터의 賤職思想이 아직까지도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業主들은 몇몇한 서비스業으로서의 職業觀과 矜持를 갖지 못하는 경우

도 있다.

또한 良心을 잃고 黃金萬能主義에 사로잡힌 一部 製造·加工販賣業者의 한탕주의는 有害食品이 製造·加工·販賣되는 主要原因의 하나라 하겠다.

2. 國民生活水準과 意識 및 對民弘報

아직도 一部 國民사이에는 價格이 低廉한 그에 따른 綜合行政遂行形態의 組織과 機構로 되어 있어 특히 식품등과 같은 技術行政을 遂行하는데 問題가 많은 實情이다.

즉, 서울特別市·直轄市·道등 地方行政機構가 事業指示와 監督은 保健社會部로부터 받으나 人事權 등은 內務部로부터 받고 있어서 保健社會部로서의 業務監督權에 限界性이 있다.

또 이러한 行政機構와 業務分掌 內容으로 볼 때 責任行政이 結如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先進國의 경우를 보면 衛生關聯業務는 專門職 從事者가 勤務하는 保健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일부郡의 경우 課에서 執行하고 있어 適任官廳의 適任者에 의하여 執行되어야 하는 專門業務가 一般職公務員에 의하여 소홀히 取扱되는 경우에 적지 않다.

나. 迅速性 問題

食品은 다른 商品과 달리 性質上 그 流通期間이 짧은 반면에 流通範圍가 넓다.

따라서 食品衛生行政은 迅速성과 正確性을 그 생명으로 한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의 경우 問題食品의 發生 및 處理狀況 情報가 電算網 등에 의해 워싱턴과 하와이가 동시에 연결되듯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迅速

〈丑 8〉 規模別 從業員數別 現況

(單位: %)

區 分	規 模 別 (㎡)			從 業 員 數 別 (人)			賃 貸 業 所	備 考
	33㎡ 미만	33㎡ ~ 100㎡	100㎡ 이상	5人 미만	5 ~ 10人	10人 이상		
食品製造 加工業	18.3	65.5	34.5	70.2	83.4	16.6	50	
食品接客業	56.4	91.4	8.6	88.5	98.5	1.5	77	

*'87. 保健社會部 統計年報

한 電算處理가 食品衛生分野에도 導入되어야 한다.

다. 專擔要員의 不足 및 專門性 微弱

過去 10年間('78~'87年) 全國의 食品製造 販賣 및 接客業所의 增加現況을 보면 7.78%로서 그중 食品販賣運搬業所는 11.72%, 食品接客業所는 7.79%, 食品製造加工業所는 2.32%의 增加趨勢이다.

'87年末 現在 總監視對象 業所數는 465,219 個所로서 現 食品衛生監視員은 1,131名으로 食品衛生監視 對象業所를 年 2回 監視할 경우 2,528名의 人員이 더 필요한 實情이다.

<表 9>에서와 같이 日本과 우리나라의 法定衛生監視 回數를 比較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日本의 4분의 1의 水準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監視要員의 專門性의 정도를 보면 필요한 食品類를 選好하는 傾向이 있으며 低質 有害食品을 購入했을 경우에도 大部分이 購入價가 少額이므로 複雜한 告發節次上 問題와 補償 등의 不確實性등을 理由로 忌避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그간 많은 消費者團體가 活潑히 消費者 保護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나 당국과의 有機的인 協調體制 結如로 效果의인 情報交換 이라든가 積極的인 消費者 保護活動 및 對民 弘報가 未洽하였다고 본다.

3. 食品衛生行政制度上的 問題

가. 食品衛生行政機構의 脆弱性

食品衛生行政을 強化하고 先進化하기 위해서 1985年 保健社會部內에 衛生局을 新設하였으나 일선 行政機構인 市·道以下는 아직 脆弱點을 안고 있다.

現在의 行政機構는 二元化 行政體制로 行政命令이나 監督權이 미약하다. 市·道以下 機關의 거의 모든 地方行政機構의 管理는 職制上 內務部 管掌下에 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資格證을 所有한 者가 現從事者 1,131名中 61.4%인 694名으로 全體의 으로 볼 때 專門性이 微弱하다 할 것이다.

라. 無許可 業者에 대한 行政罰의 實効性 結如

現在 無許可 製造·販賣와 營業基準 및 規格에 맞지 않는 製品의 製造·販賣, 그리고 病肉 또는 有害食品을 販賣할 경우 最高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5百萬원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無許可의 경우 營業停止 등 行政制裁 不可) 行政罰은 行政擔當 公務員 또는 警察의 告發措置에 의하여 司法的 節次를 거쳐 賦課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行政擔當 公務員이 告發措置할 경우 警察, 檢察에서의 調書作成 등 一般業務時間을 뺏거나 複雜하고 煩雜한 後續措置가 要求되어 告發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司法節次를 밟아 懲役이나 罰金을 賦課할 경우에도 罰則 정도가 微弱(無許可 營業의 경우 20~50 萬원의 벌금이 常例)하여 實効性에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過徵金의 경우 1個月 營業停止에 最小 30萬원 最高 360萬원임) 따라서 許可業所와 無許可 業所에 대한 罰則輕重을 比較할 때 許可業所는 營業停止 등 不利益 정도가 無許可 業者보다 중한 處罰을 받게 되는 結果가 되고 있다.

VI. 食品犯罪 豫防 및 團束方向

食品犯罪의 豫防 및 團束方向 역시 食品衛生制度를 構成하는 食品製造·加工·販賣業者, 消費者인 國民 그리고 規制者로서의 國家 즉, 세 要素間 各各의 役割의 充實化와 세 要素間 相互關係의 効率化 및 調和 등으로 살펴 볼 수 있는데 各 者의 役割의 充實化와 相互間의 効率化 및 調和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食品製造·加工·販賣業의 水準向上

우리나라 食品關係業所는 大部分 零細業所이며, 食品製造·加工業 및 接客業所 從事者의 意識水準이 他業種에 比하여 낮은 實情이

〈표 9〉 우리나라와 日本의 食品衛生業所 法定衛生監視回數 比較

	韓 國			日 本		
	業 所 數	法 定 監 視 回 數	總 法 定 回 數	業 所 數	法 定 監 視 回 數	總 法 定 回 數
1. 乳加工品製造業	56	4	224	2,918	12	35,016
2. 食肉製品製造加工業	189	4	756	11,315	6	67,890
3. 人蔘製品製造加工業	53	4	212			
4. 集團給食所	2,225	4	8,900	79,861	12	958,332
5. 아이스크림	103	2	206	10,005	6	60,030
6. 豆乳類製造業	610	2	1,220	26,032	6	156,192
7. 營養等食品製造業	27	2	54			
8. 大衆飲食店營業	175,652	2	351,304	1,406,206	12	16,874,472
9. 遊興飲食店營業	16,427	2	32,854			
10. 菓子店營業	9,071	2	18,142	355,347	12	4,264,164
11. 茶房營業	37,834	2	75,668	148,139	6	888,834
12. 休憩室營業	459	2	918			
13. 菓子類製造業	1,233	1	1,233	91,229	12	1,094,748
14. 魚肉軟製品製造業	221	1	221	5,378	12	64,536
15. 통조림·병조림	113	1	113	3,588	12	43,056
16. 食用油脂製造業	9,178	1	9,178	545	6	3,270
17. 麵類製造業	789	1	789	13,203	6	79,218
18. 清涼飲料	149	1	149	2,607	4	10,428
19. 인스탄트食品	16	1	16		6	
20. 調味食品	322	1	322	3,209	6	19,254
21. 食用얼음	269	1	269	2,511	2	5,022
22. 酒類製造業	534	1	534	3,405	6	20,430
23. 添加物	189	1	189	1,757	6	10,542
24. 食品販賣業	45,846	1	45,846	1,395,490	2	2,790,980
25. 食品冷蔵·冷凍	167	1	167	5,789	12	69,468
26. 食品調査處理	1	1	1	1	4	4
27. 容器·包裝類	567	1	567	63,339	1	63,339
28. 其 他	3,987	1	3,987	519,899	3.76	1,956,092
計	306,287	平均1.8回	554,039	4,151,773	平均 7.1	29,535,317

므로 이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業所의 大型化, 施設裝備 등의 現代化를 誘導하고 零細業所에 대하여는 施設資金의 支援 또는 類似業種別로 統·廢合하는 方案 등을 研究하는 同時에 國家機關의 專門研究所를 育成, 業所에 대한 技術支援과 專門人力的 訓練을 통해 質의 向上을 圖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自體 食品衛生管理人 등의 自家衛生 檢査, 品質檢査 등의 活動을 助長·支援하여

活性化시킴으로써 業者가 自律的으로 食品衛生의 向上을 圖謀케 하여야 한다.

2. 消費者의 告發精神提高와 不正·不良食品 弘報強化

消費者는 食品의 安全性·完全性 및 健全性등을 要求할 權利意識의 向上과 더불어 不正·不良食品의 告發精神을 涵養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消費者保護院 및 消費者保護團體 등은 消費者保護活動을 積極的으로 展開하는 한편 政府의 關係機關과 情報交換 등 有機的인 紐帶를 가져야 할 것이며 政府는 不正·不良食品에 대한 情報를 消費者들에게 널리 弘報하여 消費者들이 健全食品과 不正·不良食品을 判別할 수 있도록 弘報를 強化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3. 食品衛生行政制度 改善

가. 衛生行政機構 一元化

現在 內務部와 保健社會部로 二元化되어 있는 衛生行政體系를 一元化하여 行政命令이나 監督權, 人事權등을 能率的인 綜合行政形態로 轉換해야 하며, 그 한 例로 現在 市·郡·區 社會課에서 擔當하고 있는 食品衛生行政業務를 過去 '76年度 以前과 같이 保健所로 移讓하고 保健所에 대한 監督權, 人事權을 保健社會部로 移管하여 衛生行政體制를 一元化하는 方案 등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나. 迅速·正確한 行政體制樹立

經濟成長과 國民의 기호도 變化, 食品産業의 發達로 인스턴트食品 등 多樣한 種類의 食品이 一時에 大量 製造·販賣되고 있어 그로 인한 危害發生時 많은 事故의 危險性이 增加되고 있다.

따라서 各種事故의 危險으로부터 迅速히 對處하기 위하여 地域間(中央, 市·道, 市·郡)의 迅速한 情報體制를 構築하고, 正確한 檢査業務를 保障하며 業所의 施設, 認·許可事項, 有害食品情報 등 諸般事項을 電算化 管理하여야 할 것이며, 機動性 確保를 위하여

監視機動能力을 強化하여야 할 것이다.

다. 衛生監視要員의 增員 및 專門性提高監視體制의 改善

食品犯罪發生을 豫防하고 團束하는 一線擔當者인 食品衛生監視員을 各業種別 效果的인 衛生監視回數와 關聯하여 이를 遂行할 수 있도록 增員 確保하고 이들의 處遇改善과 함께 專門性을 提高하여 單純監視에서 專門性監視로 監視의 質을 向上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衛生監視는 儀禮的이고 外形的인 監視를 止揚하고 原料購入段階부터 製造·生産·消費段階에 이르기까지 體系的이고 科學的인 監視體制로 轉換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監視目標를 設定하고 業種別로 原料에서부터 流通段階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側面에서의 危害要因을 分析한 監視指針을 마련하여야 하고, 業所에서는 出荷前 自家品質管理를 強化하여 食品의 安全性을 保障하여야 하고, 業種別 製造工程을 制定하여 모든 業所가 同 基準에 따라 製造·加工토록 義務化함으로써 品質向上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라. 行政罰의 實効性 提高

現在 無許可 食品製造業者는 적발시 營業停止 등 行政處分이 不可하여 사직당국에 告發措置로 行政罰을 課하고 있으나, 실제 告發時 大部分 輕한 罰金刑으로 處罰되기때문에 그 根絶에 대한 實効性이 약한 實情이다.

따라서 不正食品 등의 源泉的인 流通封鎖를 위하여는 食品衛生法과 保健犯罪團束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重罰規定을 適用하여 그 實効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보다 빠른 기상 보다 높은 이상 보다 힘찬 전진